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(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) 제3항, 보험업법시행령 제 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-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.
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
보험업법 제111조 제3항에 관련된 사항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1. 대주주명</td><td>DB캐피탈(주)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2. 신용공여내용</td><td>신용공여일</td><td>2020년 4월 21일
(최초 공여일 2020년 3월 27일)</td></tr>
<tr><td>신용공여종류</td><td>신용대출</td></tr>
<tr><td>신용공여금액(원)</td><td>36,000,000,000
(최초 공여금액 24,000,000,000)</td></tr>
<tr><td>신용공여총잔액(원)</td><td>36,000,000,000
(최초 공여총잔액 24,000,000,000)</td></tr>
<tr><td>만기일</td><td>2022년 4월 21일</td></tr>
<tr><td>신용공여금리(%)</td><td>기타사항 참고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3. 자금용도</td><td>본건은 기존 거래에 대한 주요내용 변경공시임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4. 이사회결의일</td><td>2020년 4월 17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5. 기타</td><td>- 본 건은 자회사인 DB캐피탈(주)와 2020년 3월 27일 기 체결한 240억 신용대출에 관한 주요 내용 변경공시임
- 상기 2항의 신용공여일은 대출약정 체결일임
- 상기 2항의 신용공여금액은 대출한도임
- 대출금리: 공정위의 ‘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’ 준용하여 인출 건별로 산정
- 대출기간: 2년

[주요내용 변경사항]
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기 약정</td><td>변경</td></tr><tr><td>대출방식</td><td>신용대출</td><td>한도약정대출</td></tr><tr><td>신용공여액</td><td>240억</td><td>360억(한도)</td></tr></table>- 기존 신용대출 240억 대환 후, 잔여 한도(120억) 내 건별 인출

- 미인출수수료([대출한도-인출누적금액]*0.2%) 부과</td></tr>
</table>